

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지정증

1. 지 정 번 호:

2. 법 인 명:

3. 대표자 성명: (생년월일 :)

4. 주된 사무소의
소재지:

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30조의2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
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직인